사이버 괴롭힘의 실태와 대응방안

임 운 식(서라벌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최 현 식(서라벌대학 경찰경호행정과 초빙교수)

Actual Conditions of Cyberbullying and the Countermeasure

Lim, Woon-sik
Choi, Hyun-si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xact state of cyberbullying and the countermeasure for it.

cyberbullying is characterized by having the wideness, the anonymity and the intellectualization unlike the harassment of off-lin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yberbullying is increased through the e-mail, cellular phone, and website around the teenagers.

In particular, the cyberbullying has appeared mainly among the same age friends , it is proved that injurers inflict the harassment mainly at their own place and the ratio of the harassment by one self is higher than many.

In addition, it is quite probable that the injurer-student who inflicts the harassment in off-line also can do it in on-line and to attack the cyberbullying is easy to find by the student who is indulged himself in internet use.

Therefore, it is presented that the countermeasure in educational side and systematic side on this study.

First on the educational side, there are presented the practice of the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the cyberbullying, expansion of the preventive schools for the cyber ethics and cyber crime and strengthening of the guideline for students in cyberspace.

Second on the systematic side, there are presented the appointment of various committe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amaged students, preparation of laws for cyberbullying, expansion of information office for internet addiction,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school custodian and to extend the operating for cyber clearness school.

[*Key Words*: Cyberbullying, Cyber Crime, Cyber Ethics, School Violence, Cyber Violence]

Ⅰ. 들어가며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의 증가로 학교 내·외에서 사이버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당국과 교사들은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미국, 캐나다 등은 사이버학교폭력

행위로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등 사이버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0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연구팀이 미국 전역 12~17세 청소년 1,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1%가 최근 1년 동안 1~3차례 사이버 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 청소년 중 85%가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한다고 답해 오프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2)]

한편 미국 아동·청소년 사이버 괴롭힘 연구의 권위자인 위스콘신대학의 저스틴 패친 교수와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의 새미어 힌두자 교수가 2008년 초 미국 전역 중학생 1,96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해봤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최소 한 차례 이상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무려 842명(42.9%)에 이르렀다. 보다 심각한 결과는 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가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656명(33.4%)이나 됐다는 점이다.[3)]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급우를 따돌리거나 협박하는 이지메(집단괴롭힘)와 언어폭력,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사건 등이 줄을 잇고 있어 문부과학성은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초·중학생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4)]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가 5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해보거나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본적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번도 없다' 24명(40.7%), '1번 정도 경험 있다' 17명(28.8%), '가끔씩 있다' 7명(11.9%), '자주 있다'가 11명(18.6%)인 것으로 나타났고,[5)] 2007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 가운데 368건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6)]

---

2) 김유경, "美 10대 4명 중 3명 사이버 괴롭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0050012(2009.10.6검색).

3) 김정필,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 인터넷 독버섯 근절 민관 뭉치고 州의회 발벗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718002135&subctg1=&subctg2=(2009.10.12검색).

4) 세계일보, "日의 휴대전화 등교금지 우리도 검토를"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202004049&subctg1=02&subctg2=01(2009.10.12 검색).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 "사이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http://www.youthlove.net/index.php?m=10&doc=home/gnuboard.php&bo_table=notice&sselect=&stext=&ssort=wr_datetime&sorder=asc&soperator=&page=11&wr_id=158(2009.10.13검색).

6) 우상욱, "사이버 폭력이 더 치명적 악플도 학교 폭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25847(2009.10.13검

육체적인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 괴롭힘은 인터넷이나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 성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괴롭힘을 가할 수가 있다.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나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지만 사이버 괴롭힘은 한명이 여러 학생에게 악성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보낼 수 있고 발신자 표시를 하지 않고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자를 쉽게 판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을 방치할 경우 피해의 범위가 확산됨은 물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폭력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인 '사이버 괴롭힘' 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Ⅱ.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태

1. 사이버 괴롭힘의 개념

사이버 괴롭힘(cyberbullies)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 해악의 의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개인웹사이트, UCC등을 통해 고의, 반복적 또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이다(Li, 2007: 1179).

심리학자들은 괴롭히는 사람과 희생자는 인터넷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괴롭힘은 잔인성을 띨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처럼 충동억제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 기능이 떨어지면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7]

색).

7) 연합뉴스, "미 청소년 사이버 괴롭힘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상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 중 하나이다.

2. 사이버 괴롭힘의 특징

1) 광범성

사이버 괴롭힘은 오프라인 공간과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한사람의 가해자가 동시에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가할 수도 있다.

2) 익명성과 비대면성

사이버 괴롭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악성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상대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3) 지능화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비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휴대폰, UCC, 문자 메시지, 미니홈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는 발각을 피하기 위해 PC방 등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의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한다.

3. 사이버 괴롭힘의 실태

1) 또래친구를 비방하거나 비방을 받은 경험

2004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또래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13.5%가 있다고 하였다. 86%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인터넷 상에서 또래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본 경험

심각"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08/007000000200408261624989.html(2009.10.14).

구분	빈도	퍼센트
자주있다.	300	2.9
가끔있다.	1,084	10.6
거의없다	2,475	24.2
전혀없다	6,322	61.8
무응답	52	0.5
합계	10,233	100.0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청소년종합실태조사』(중고등학생 나형), 2004, 44면.

한편 인터넷 상에서 또래 친구로부터 비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7.7%가 비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인터넷 상에서 또래 친구로부터 비방을 받은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자주있다.	148	1.4
가끔있다.	644	6.3
거의없다	2,153	21.0
전혀없다	7,225	70.6
무응답	63	0.6
합계	10,233	100.0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청소년종합실태조사』(중고등학생 나형), 2004, 45면.

2) 인터넷상에서 욕을한 경험 여부

2008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욕을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50.8%가 욕을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40.3%가 욕을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표 2-3> 인터넷상에서 욕을한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경험없다	918	40.3
경험있다.	1,339	50.8
무응답	19	0.8
합계	2,276	100.0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청소년생활 · 의식 실태조사』, 2008, 14면.

3)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한 괴롭힘 피해경험 여부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66.6%가 있다고 하였고 47.6%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터넷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욕이나 짓궂은 말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자주있다.	270	11.9
가끔있다.	914	40.2
별로없다.	600	26.4
전혀없다	482	21.2
무응답	10	0.4
합계	2,276	100.0

출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청소년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19면.

4)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및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성동규 등(2006)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62%가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49.1%가 사이버모욕을, 14%가 사이버명예훼손을, 그리고 11.4%가 사이버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사이버폭력 피해 실태

	유경험(%)	무경험(%)
사이버모욕	541(49.1)	841(60.9)
사이버스토킹	857(62)	525(38)
사이버명예훼손	188(14)	1194(86)
사이버성폭력	157(11.4)	1225(88.6)
프라이버시침해/신상정보 유포	199(14.4)	1183(85.6)
사이버폭력 전체	1042(75.4)	340(24.6)

출처: 성동규 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9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104면.

또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터넷공간을 매개로 하는 괴롭힘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 친구를 통한 괴롭힘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참조).

<표 2-6> 사이버폭력 피해의 가해자 분석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신상정보유포(%)
친구	77(14.2)	61(32.4)	18(11.5)	69(31.4)
같은 커뮤니티회원	32(5.9)	13(6.9)	9(5.7)	9(4.1)
인터넷에서 만난사람	48(8.9)	15(8)	13(8.3)	23(10.5)
전혀 모르는 사람	234(43.3)	62(33)	75(47.8)	58(26.4)
익명	150(27.7)	37(19.7)	42(26.8)	61(27.7)
합계	541	188	157	199

출처: 성동규 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9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104면.

한편 2007년 6월에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체중 감량 경험담을 소개했던 여고생이 또래들의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2009년 9월에는 초등학생들이 반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를 보내 무려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8] 이러한 일련의 실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학교도 이제 사이버괴롭힘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Ⅲ. 사이버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1. 교육적 측면

1) 가정에서 사이버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인터넷 이용인구가 점차 저 연령화 되어 가고 있고 맞벌이 가정의 증대로 학생들은 가정

8) 이호진, "초등생, 금품 상납 요구 협박 문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10224608924&p=imbc(2009.10.5검색).

에서 인터넷에 부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가정에서 사이버괴롭힘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9]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Dehue, Bolman과 Völlink(2008: 219)의 연구에서는 상대방에게 사이버 괴롭힘을 가하였다고 응답한 초·중등생 85.6%가 자신의 집에서 사이버괴롭힘을 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혼자서 사이버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응답은 62.97%, 친구와 함께 사이버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응답은 24.6%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이버 괴롭힘은 자녀들이 집에 혼자 남아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예절을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지식이 없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지역동사무소에 학부모들을 모이게 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인터넷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사이버괴롭힘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예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유아원교육을 강화하여 범죄성향이 싹트지 못하게 하는 예방정책을 펴고 있다(배종대, 2000: 284).

2) 정보통신윤리 및 사이버버범죄예방교실 확충

현재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과서가 배급되고 있지만 이는 선택과목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 학교는 외부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2004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윤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수료 후 강사들은 정보화진흥원 및 각 도 및 시청에 인력풀이 구성되어 일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특강은 1년에 1번 정도에 불과하고 예산부족으로 해당학교가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특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대부분 1시간에 불과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년과 저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효과도 큰 기대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원확충을 통해 교육시간과 횟수를 더 늘이고 고학년과 저학년을 따로 구분하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예방교실' 도 한시적인 교육이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사이버범죄예방교실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경찰관이 해당학교에 나가 특강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범죄예방교

9) 김정필,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 인터넷 윤리교육 가정서 필수",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80717003022&subctg1=&subctg2=(2009.10.7검색).

실에 참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역량이 있는 경찰관이 있을 경우 전문적으로 외부특강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주고 인사고과에 있어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예방교실을 더 늘여 각급 경찰서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경찰 및 범죄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도 각급학교에서 요청시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이버상의 학생지도활동 강화

흔히 사이버괴롭힘은 폭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괴롭힘도 엄연한 학교폭력의 하나이므로 피해학생이 이를 건의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등 향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Li(2007: 1785)의 연구에 의하면 오프라인상에서 괴롭힘을 가한 학생이 온라인상에서도 상에서도 괴롭힘을 가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상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은 학생은 온라인상에서도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오프라인상에서 가해를 가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상에서도 괴롭힘을 가한 적이 없는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이버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아는 학생이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에 해당 사이트 및 게시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담당 교사는 오프라인상의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하게 사이버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의 학생지도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측면

1) 다양한 위원위촉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7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학교폭력처벌및대책에관한법률 제8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10]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다. 하

10)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2.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

지만 오늘날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못지않게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중독상담사, 심리치료전문가, 정보통신윤리강사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복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것을 학교장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해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 출석정지 등은 피해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가해학생이 마음만 먹는 다면 학교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피해학생을 다시 괴롭힐 수도 있는 문제이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가할 수 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 일정기간 학교 내·외에서 휴대폰사용을 금하게 한다 던지 피해학생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내·외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보호자에 대해서도 해당학생의 인터넷이나 휴대폰사용을 규제토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이버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웹사이트(Cybermentors.org.uk)에서 사이버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해 문자메시지, 온라인비디오 등을 제공하고 있다.[11]

3) 사이버괴롭힘 행위에 대한 관련법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간에 발생한 사이버괴롭힘행위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의율하고 있으나 단순한 사이버괴롭힘이 아닌 집단적이고 흉포한 사이버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입법을 통해 범죄로 규율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11) Dan Whitworth, "Thousands turn to cyberbully site" http://news.bbc.co.uk/newsbeat/hi/technology/newsid_7959000/7959947.stm(2010.4.13검색).

2006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36%가 사법제도를 통해서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가 학교차원에서, 20%가 당사자간에, 12%가 지역사회내전문조정기관에서, 8%가 담당교사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7: 1).

미국에서는 사이버괴롭힘으로 학생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자 사이버괴롭힘을 범죄로 규율하는 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미주리주는 맷 블런트 주지사가 메간 마이어의 자살 사건 직후 곧장 '사이버괴롭힘 태스크 포스'를 꾸린 뒤 올해 1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경중을 떠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 통과시켰고 버몬트 주에서는 학교장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괴롭힘도 징계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매릴랜드, 아칸소, 델라웨어, 아이다호, 아이오와, 워싱턴, 로드아일랜드 주 등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12] 하지만 집단적이고 흉포한 청소년의 사이버괴롭힘 행위를 범죄로 규율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행 경찰단계에서 검토되고 되고 있는 회복적사법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4) 인터넷중독상담소의 확충

이성식(2008: 9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범죄(사이버욕설, 명예훼손과 비방)는 인터넷사용시간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Li(2007: 1785)의 연구에서도 컴퓨터사용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사이버괴롭힘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외(2010: 26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성향이 높을수록 폭력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고 폭력생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시간을 적절히 규제함은 물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넷중독검사를 실시하여 중독의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역 인터넷중독상담소의 상담사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터넷 중독상담소와 상담인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중독상담소는 각 지방체신청 당 1곳에 불과하며, 중독상담원의 숫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재원확충을 통해 인터넷중독상담소를 더 설치하고 상담원의 숫자도 더 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급 학교와 인터넷중독상담소간 유기적인 협조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2) 김정필,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 인터넷 독버섯 근절 민관 뭉치고 州의회 발벗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718002135&subctg1=&subctg2=(2009.10.12검색).

5) 배움터지킴이 제도 개선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 부산지역 '스쿨폴리스'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것으로, 전직 경찰관 또는 교사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현장서 예방·제지해 불량써클 결성, 집단따돌림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학생에 비해 배움터지킴이의 숫자는 매우 적으며,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이나 학급담임의 허락 없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폭력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을 주고 담당교사나 학교장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에 의해 채용하고 있는데 보다 공정한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위해서는 교육청단위로 채용을 하여 각 학교에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사이버분야의 지식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급료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상징적인 역할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채용함으로서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6) 사이버청정학교 확대운영실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82개교를 대상으로 '사이버청정학교'를 운영해 왔다. 사이버청정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강교육에 비해 장점이 많다. 하지만 사이버청정학교는 교육청에서 선발된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수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사이버청정학교로 지정되기 어렵다. 학교에서의 사이버 괴롭힘 행위가 인문계고교보다는 실업계 고교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감안한다면[13] 사이버청정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우수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통해 사이버청정학교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Ⅳ. 나가며

이상과 같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실태와 일련의 대책을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디지털기

13)연합뉴스, "전북 중·고생 30% 학교폭력 경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36853(2010.4.12검색).

기의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디지털기기가 가진 해악성에 대한 예방교육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충동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학교 무단결근, 대인기피,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성인들의 사이버 괴롭힘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의율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괴롭힘행위는 학교폭력에 의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폭력은 주로 오프라인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하였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공간과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괴롭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방송이나 언론매체도 공익광고를 통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해악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재엽 외,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생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 한국청소년학회, 2010.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3. 성동규 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티케이션학보, 1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4. 이성식,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5.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4.
6.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학교폭력의 효과적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욕구조사: 피해학생』, 2006.
7.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청소년생활·의식 실태조사』, 2008.
8. 김유경, "美 10대 4명 중 3명 사이버 괴롭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0050012(2009.10.6검색).
9. 김정필, "국경없는 사이버 범죄 인터넷 독버섯 근절 민관 뭉치고 州의회 발벗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0718002135&subctg1=&subctg2=(2009.10.12검색).
10. 세계일보, "日의 휴대전화 등교금지 우리도 검토를"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202004049&subctg1=02&subctg2=01(2009.10.12검색)
11. 이호진, "초등생, 금품 상납 요구 협박 문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10224608924&p=imbc(2009.10.5검색).
12. 우상욱, "사이버 폭력이 더 치명적 악플도 학교 폭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25847(2009.10.13검색).
13. 연합뉴스, "미 청소년 사이버 괴롭힘 심각",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08/007000000200408261624989.html(2009.10.14검색).
14. 연합뉴스, "전북 중·고생 30% 학교폭력 경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36853(2010.4.12검색).

1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 "사이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http://www.youthlove.net/index.php?m=10&doc=home/gnuboard.php&bo_table=notice&sselect=&stext=&ssort=wr_datetime&sorder=asc&soperator=&page=11&wr_id=158(2009.10.13검색).
16. Dan Whitworth, "Thousands turn to cyberbully site" http://news.bbc.co.uk/newsbeat/hi/technology/newsid_7959000/7959947.stm(2010.4.13검색).
17. Dehue Francine, Bolman Catherine and Völlink Trijntje, "Cyberbullying: Youngsters' Experiences and Parental Perce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008.
18. Li Quing, "New Bottle But Old Wine: A Research of Cyberbullying in Scho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 2007.

논문접수일 : 2010년 3월 23일
심사의뢰일 : 2010년 4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27일